

구미시 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이 조례는 관내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제정 (2000.12.15.)되었으나,
- 나.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전통사찰보존 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조항이 2005. 12월 개정되어, 법령상 근거 없는 임의규정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

3. 조 례 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①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②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
-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전통사찰보존법」

[시행2006.8.5] [법률 제7678호, 2005.8.4, 타법개정]

제6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2006.6.15] [법률 제7729호, 2005.12.14, 일부개정]

제6조의2(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역사문화보존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14.]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7호, 2012.2.17., 일부개정]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④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2.2.17.>

⑤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⑥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제목개정 2012.2.17.]

소관 실·과		문화관광담당관실
입 안 자	과 장	김 구 연
	담 당	강 황 진
	담 당 자	박 은 진 (480-6623)